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사법정이율의 변동제 도입〉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99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4. 10.
3.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국내 대표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는 등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일본 또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조정하는 변동이

율제를 도입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상사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음(제54조).

○ 법정이율이란 당사자간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로, 「민법」 제379조¹⁾의 민사법정이율은 연 5%임.

○ 다만,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투자자본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에서는 상행위의 영리성을 반영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무²⁾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 대비 1%p 높게 규정함.

□ 개정안은 상사법정이율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사법정이율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변동하게 하려는 취지임(안 제54조).

1)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라 할 것이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상법 제54조 소정의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개정안
第54條(商事法定利率) 商行為로 인한 債務의 法定利率은 年 6 分으로 한다.	第54條(商事法定利率)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구체적 검토

□ 헌법재판소는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54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1헌바278 전원재판부 결정).

○ 법정이율은 이자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의 합리적이고 가정적인 의사에 부합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또는 일정한 시점의 시장이율에 따라 법정이율을 달리 정한다면 금전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위 결정의 반대의견³⁾은 법정이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방식인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되므로,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법 규정 등은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상사법정이율과 관련된 입법 연혁 및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사법정이율은 1962. 1. 20.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연 6%로 규정⁴⁾되어 있었고, 2025. 10. 현재까지 2차례의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이루어짐.

- 다만, 법무부는 금리·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4. 16.)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2. 7.)을 입법예고⁵⁾하였음.

3)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

4) 「**商法**」 [시행 1963. 1. 1.] [법률 제1000호, 1962. 1. 20., 제정]
第54條(商事法定利率) 商行爲로 因한 債務의 法定利率은 年6分로 한다

5) 법무부는 위 공고에서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금리·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목적의 개정이라고 설명함.

「상법」 입법 예고안	「민법」 입법 예고안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유럽연합(EU)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⁶⁾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리, 물가 등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전면적으로, 또는 제한된 영역에서 법정이율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음.⁷⁾

□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면, 상사법정이율을 금리 상황,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동하게 하려는 개정안은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법정이율 제도가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상사법정이율의 변동주기를 “매년”으로 정례

6) 일본의 경우 상법에서 별도의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 일본 민법 제404조는 연 3%의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으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7)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1헌바278 전원재판부 결정 중 반대의견

화하는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민사법정이율 또한 동 개정안과 같이 매년 변동하는 것으로 하려는 관련 개정안⁸⁾이 2025. 10. 현재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6788-5055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697호, 제안일: 2025. 4. 10. 이정문의원 대표발의)」